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통합환경관리제도 정비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34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효율화	2
2. 연간보고서 제도 개선 및 책임 강화	7
3. 제재수단 체계 정비	11

I. 제안경위

2025년 9월 5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관리·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장 집행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악취·비산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 등).

Ⅲ. 검토의견

1. 통합환경제도 운영 효율화

개정안은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한 경우,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명확히 하고(안 제11조 제3항),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현장 확인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② (생 략)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u>제22조</u> (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④ (생 략)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제21조의2, 제22조</u> ----- ----- ----- -----.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현행	개정안
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 -----.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되거나 시설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다배출사업장에 대해 매체별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허가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 중임.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 (배경) 오염물질 다배출사업장에 대해 매체별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환경부가 허가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년~)
- (대상) 20개 업종 중 수질 700톤/일 배출 또는 대기 20톤/연 이상 발생 사업장
 - '17~'24년 19개 업종 1,307개 사업장의 통합허가 완료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 ⑨ (생략)

< 연도별 허가 실적 및 계획 >

	[‘17-’20]	➡ [‘18-’21]	➡ [‘19-’22]	➡ [‘20-’23]	➡ [‘21-’24]	➡ [‘23-’27.6.]
업 종	발전 증기공급 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합성수지 석유화학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주류,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시멘트 제조업 등
사업장 수	294개	239개	183개	162개	429개	28개

- (가동개시) 사업자는 허가 이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설치(변경)하고 가동하려는 경우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통합환경관리인)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등이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적정 운영·관리
- (연간보고서) 사업자는 매년 시설 운영·관리 현황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제출
- (운영·관리)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함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²⁾, 사업자가 가동개시를 신고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를 수리³⁾하여야 함.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동법 제11조4)에 따라 임차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음.

개정안은 ①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을 사업자로 보는 조항에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를 추가하고, ② 가동개시 신고 시 현장확인을 거쳐야 수리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동일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차인을 사업자로 보는 조항에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를 추가하여 실제 시설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운영책임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 기준 가동개시 신고 처리 건수는 546건, 평균 기간은 7일이나, 2025년 4월 일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동일한 변경신고로 가동개시 접수 후 수리까지 15일이 소요되어 생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 방법 간소화를 요청한 민원 사례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민원과 같은 현장확인 절차를 완화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가동개시 신고 처리 현황 및 처리 기간]

(단위 : 건, 일)

구분		계	수도권청	한강청	낙동강 청	금강청	영산강 청	대구청	원주청	전북청
'22	건수	355	56	61	78	44	32	37	18	29
	기간	8.0	6.3	6.0	5.1	10.3	9	11.0	10	6.2
'23	건수	457	49	47	90	74	79	55	20	43
	기간	7.4	7.3	5.0	6.3	10.6	10	7.2	8	4.9
'24	건수	546	53	56	106	121	85	61	23	41
	기간	7.0	5.3	8.4	4.8	8.7	11	6.8	8	3.1
'25.9	건수	434	70	52	64	92	44	80	10	22
	기간	7.8	5.5	8.7	6.0	8.8	11	6.1	9	7.6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 연간보고서 제도 개선 및 책임 강화

개정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실 작성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11조의4제1항제5호 신설), 연간 보고서를 전문성을 갖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대행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③ (생략)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지설의 운영, 자가측정의 준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통합관리사업장⁵⁾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은 제11조의²⁶⁾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대행⁷⁾하게 할 수 있음.

참고로, 2021년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제도 시행 후 2025년 9월까지 대행업을 등록한 업체 수는 누적 196개임.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현황]

(단위 : 개)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9	누적
등록업체수	120	40	19	6	11	196

※ ‘21년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제도 시행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5)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33조⁸⁾에 따라 매년 시설의 운영·관리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해야 함.

[연간보고서 개요]

기간 : 매년 7월 31일까지

내용 : ①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통합허가대행업의 연간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33조제2항), 대행업자가 보고서 작성 시 거짓·부실 작성 금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1 제5호).

대행 근거를 신설할 경우 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여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성실한 보고서 작성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보고서 작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하의 벌금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¹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연간보고서 성실 작성 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통합허가서류등 작성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제재 수단을 추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제재수단 체계 정비

개정안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조치 기준 위반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2조제2항제2호), 기존사업자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8조제4호), 기존의 포괄적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안 제41조제2호), 비산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악취 억제시설 미설치 등 특정 위반에 대하여 개별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u>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u>
2. ~ 4. (생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③·④ (생략)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6. (생략)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지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2항 또는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 ----- ----- 제41조(벌칙) ----- ----- -----. 1. ~ 1의6. (현행과 같음) <삭제>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형벌 합리화

현행법 제21조제2항제1호¹¹⁾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1조제2호¹²⁾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됨.

현행법은 형벌 조항만을 두고 있으며 위반의 내용이나 경중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어 개별 환경법에 비해 과도하거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로, 통합허가와 관련된 개별 환경법에서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통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음.

[타 법령과의 제재 수준 비교]

매체 구분	시설 설치·운영 ·관리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분규정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5항	300만원 이하 벌금 (제92조제8호)	-	(1차) 개선명령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20일 (4차) 조업정지 20일
비산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5항	-	-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20일 (4차) 조업정지 20일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300만원 이하 벌금 (제92조제5, 6호) ※ 분체상 물질 운송 제외	(1차) 120만원 (2차) 160만원 (3차) 200만원 ※ 분체상 물질 운송 시 적용	-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조치이행명령 (2차) 사용중지 - 사설나 조차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비점오염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6항	-	-	저감시설설치명령 저감시설개선명령
악취	악취방지법 제8조제4항	300만원 이하 벌금	-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 기준 위반 시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하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를 신설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법적 책임을 조정함으로써 형벌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 미준수	-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 : 6개월 이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제41조제2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제2호 신설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처분은 총 11건임.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 현황]

위반연도	위반건수	조치내역
2022	3	조치명령 및 고발
2023	4	조치명령 및 고발
2024	4	조치명령 및 고발
2025.9	1	조치명령 및 고발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 기존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신설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법률 시행('17.1.) 당시 각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통합허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 '기존사업자'는 해당 업종의 적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법률 제13603호 부칙 조항]

부 칙 <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 략)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전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⑤ ~ ⑦ (생 략)

그러나 부칙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법률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이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법률 제정 전후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¹³⁾에 대해 적용되는 제재처분 기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 처분 현황]

위반연도	위반건수	조치내역
2021	1	사용중지
2022	4	사용중지
2024	2	사용중지
2025.9	1	사용중지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46

1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